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4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송옥주・민병덕・이연희

백승아 • 부승찬 • 한정애

문진석 • 이수진 • 이병진

이원택 • 서삼석 • 박 정

이재관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·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전부 군인 또는 군무원 등 내부 자로만 되어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의2제2항 등).

법률 제 호
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·군무원 또는 공무워
- 2. 군인·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・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의2(군무원징계위원회) ①	제39조의2(군무원징계위원회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	②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
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
는 장교 · 군무원 또는 공무원	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
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	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
	를 구성할 때에는 제2호에 해
	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
	되어야 한다.
	1.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
	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・군무
	원 또는 공무원
	2. 군인·군무원 또는 공무원이
	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<u><신 설></u>	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
	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・운
	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	으로 정한다.